

감정평가서

건명	한치수 외 1명 소유물건(2024타경3143)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조인수
감정서번호	0022407-2-01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인감정평가법인(주) 경기지사



지사장 조성민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박홍희

박홍희



동인감정평가법인(주) 경기지사 지사장 조성민

(서명인)



감정평가액	일십오억팔천일백칠십이만오천원정 (₩1,581,725,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조인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한치수 외 1명 (2024타경3143)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7.29	2024.07.22 ~ 2024.07.29	2024.07.30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080	토지	2,080	-	1,581,725,000
		이	하	여	백	
	합계				₩1,581,72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소재 '송탄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본건 평가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성 및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년 7월 29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4년 7월 22일 ~ 2024년 7월 29일에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4.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등은 관련 공부 및 귀 제시목록 등에 의하였음.
- ② 본건 기호(1)은 관계행정기관(평택시청 건축복지과)에 유선조회한 결과, 2008년 8월 14일에 개발 행위 관련 허가(평택시 건축복지과 신축허가-388호, 389호)를 득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 미진행 등의 사유로 2015년 7월 13일자로 관련 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 ③ 현장조사 당시 본건에는 축대 등이 소재하나,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

1. 토지 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공시지가 (원/m ²)	비고
1	평택시 이충동 111-1	909	임야	나지	자연녹지	맹지	사다리 평 지	382,800	철도저축* 자연취락
2	평택시 이충동 111-34	1,171	임야	나지	자연녹지	세로(가)	사다리 평 지	204,500	철도저축** 자연취락

*기호(1): 일부 '지하철도(약 527.7m²)' 저축.**기호(2): 일부 '지하철도(약 462.8m²)' 저축.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산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공시지가 (원/m ²)	비고
가	평택시 이충동 112-3	1,529	전	전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288,800	자연취락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가) 지가변동률기준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	비 고
녹지지역	1.989	경기도 평택시 (24.01.01~24.07.29) (녹지) 2024.01.01 ~ 2024.06.30 : 1.749 2024.06.01 ~ 2024.06.30 : 0.244 $(1 + 0.01749) * (1 + 0.00244 * 29/30)$ = 1.01989

※ 2024년 7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고시되지 않아, 직전 6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나)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발표, 2020년=100)

결 정		산출근거			
생산자물가 상승률(%)	1.387	생산자 물가지수	공시시점 당시 지수	2023.12.	117.56
			기준시점 당시 지수	2024.06.	119.19
		산 식	$(119.19 - 117.56) / 117.56$		

(다) 시점수정치 결정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일부 서비스의 가격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당해지역의 지가변동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바,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용도지역	시점수정치(지가변동률)
녹지지역	1.01989(1.98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지역요인

본건과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4) 개별요인

(가) 비교항목

- 주택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접근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농경지대(전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나) 비교내역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1	가	-	1.00	1.02	1.07	0.97	1.00	1.059

기호(1)은 비교표준지(가) 대비 행정조건(일부 철도저촉 및 지목 등)에서 열세하나, 자연조건(인근 환경 등) 및 획지조건(지세 및 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함.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2	가	-	1.04	1.02	1.05	0.97	1.00	1.080

기호(2)는 비교표준지(가) 대비 행정조건(일부 철도저촉 및 지목 등)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자연조건(인근환경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하나, 지세 및 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우세)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98두6067, 1998.07.10 92누16300, 1993.9.10)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산정방법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과 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격과의 격차율을 검토하여 산정하되, 대상지 주변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frac{\text{사례 기준 표준지가격}}{\text{기준시점 표준지가격}} = \frac{\text{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다)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 평가사례 등 내역

가) 인근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A	장당동	371-○	답	자연녹지	941,000	2024.02.08.	시가참고	-
B	가재동	326-○	임야	자연녹지	726,000	2024.06.18.	담보	-
C	이충동	151-○	전	자연녹지	865,000	2023.12.19.	담보	-
D	가재동	52-1○	임야	자연녹지	665,000	2023.08.31.	법원경매	-
E	이충동	3○	답	자연녹지	611,000	2022.05.24.	담보	-
F	가재동	산4○	임야	자연녹지	471,000	2022.09.02.	담보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번은 표기하지 않음.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인근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 현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거래면적 건물면적	비고
a	이충동 85-○	자연녹지 전 / 답	334,000,000 원 (776,744원/m ²)	2024.05.29. -	430.00 -	토지만의 거래
	의견	1) 토지가격 : (334,000,000 ÷ 430 = 776,744원/m ²)				
b	이충동 586-3○	자연녹지 전 / 전	29,469,000 원 (893,000원/m ²)	2023.04.12. -	33.00 -	토지만의 거래
	의견	1) 토지가격 : (29,469,000 ÷ 33 = 893,000원/m ²)				
c	가재동 386-○	자연녹지 전 / 전	351,213,000 원 (674,113원/m ²)	2023.02.10. -	521.00 -	토지만의 거래
	의견	1) 토지가격 : (351,213,000 ÷ 521 = 674,113원/m ²)				
d	이충동 408-○	자연녹지 전 / 전	374,400,000 원 (725,581원/m ²)	2022.12.05. -	516.00 -	토지만의 거래
	의견	1) 토지가격 : (374,400,000 ÷ 516 = 725,581원/m ²)				
e	이충동 131-○	자연녹지 임야 / 전	63,976,000 원 (727,000원/m ²)	2022.07.15. -	88.00 -	토지만의 거래
	의견	1) 토지가격 : (63,976,000 ÷ 88 = 727,000원/m ²)				
f	장당동 52-5○	자연녹지 전 / 전	700,000,000 원 (846,433원/m ²)	2024.02.19. -	827.00 -	토지만의 거래
	의견	1) 토지가격 : (700,000,000 ÷ 827 = 846,433원/m ²)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번은 표기하지 않음.

(출처: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그 밖의 요인 결정을 위한 사례의 선정

본건의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상기 평가사례, 거래사례 중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 위치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사례 (a)"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을 산정함.

(마)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가) 와 비교사례 (a)

구 분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	비교표준지 (비교표준지×지변률)	비 고
가 격(원/㎡)	776,744	288,800	-
사 정 보 정 ¹⁾	1.00	-	-
시 점 수 정 ²⁾	1.00507	1.01989	-
지 역 요 인 ³⁾	1.000	-	-
개 별 요 인 ⁴⁾	0.911	-	-
산정가격(원/㎡)	711,201	294,544	-
격 차 율	$\frac{711,201}{294,544}$	≒ 2.414	-

※ 1) 사정보정 : 별도의 사정개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 시점수정 : 경기도 평택시 녹지지역(2024.05.29. ~ 2024.07.29.) : 1.00507

※ 3) 지역요인 : 비교표준지와 비교사례 (a)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1.000).

※ 4)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	1.00	0.96	0.93	1.02	1.00	0.911

비교표준지(가)는 비교사례(a)대비 행정조건(자연취락지구)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인근환경 등) 및 획지조건(지세,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인근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기준으로한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격차 수준 및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고, 인근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보정함.

표준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공시지가 (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결정
가	평택시 이충동 112-3	자연녹지	전	288,800	2.414	2.41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기호	원/㎡						
1	가	288,800	1.01989	1.000	1.059	2.41	751,733	752,000
2	가	288,800	1.01989	1.000	1.080	2.41	766,640	76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산정

1)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본건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인 "비교사례 (e)"를 선정함.

2) 사정보정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 하며, 상기 채택된 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사정보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1.00).

3) 시점수정

사례 기호	기 간	시점수정치(지가변동률)	비고
e	2022.07.15. ~ 2024.07.29.	1.05212(5.212%)	경기도 평택시 녹지지역

4)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거래사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가격형성에 있어 상호 대체 및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기호	비교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1	e	-	1.00	0.92	1.10	1.01	1.00	1.022

기호(1)은 비교사례(e)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열세하나, 획지조건(면적 등) 및 행정조건(일부 철도 저축으로 다소 열세하나, 자연취락지구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우세)에서 우세함.

기호	비교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2	e	-	1.04	0.92	1.08	1.01	1.00	1.044

기호(2)는 비교사례(e)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획지 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하나, 면적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우세함) 및 행정조건(일부 철도 저축으로 다소 열세 하나, 자연취락지구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우세)에서 우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727,000	1.00	1.05212	1.000	1.022	781,719	782,000
2	727,000	1.00	1.05212	1.000	1.044	798,546	799,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례비교법 (원/m ²)	비 고
1	752,000	782,000	-
2	767,000	799,000	-

2)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가)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격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이 유사하여 본건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함.

(나)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소재지	공부면적 (m ²)	사정면적 (m ²)	토지단가 (원/m ²)	감정평가액 (원)	비 고
1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111-1	909	909	752,000	683,568,000	-
2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111-34	1,171	1,171	767,000	898,157,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본건의 평가목적 등을 참작하고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인근지역 가격수준 및 부동산으로서의 안정성,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평가액 및 원가법에 의한 건물 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감정평가액(원)
토지	1,581,725,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111-1	임야	자연녹지지역	909	909	752,000	683,568,000	
2	동소	111-34	임야	자연녹지지역	1,171	1,171	767,000	898,157,000	
	합 계			이 하		여	백	₩1,581,725,000.-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소재 '송탄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기호(1):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이용가능한 노선버스 정류장 등의 위치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 기호(2):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이용가능한 노선버스 정류장 등의 위치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나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기호(2)를 통하여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 기호(2) :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고속철도(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초지법>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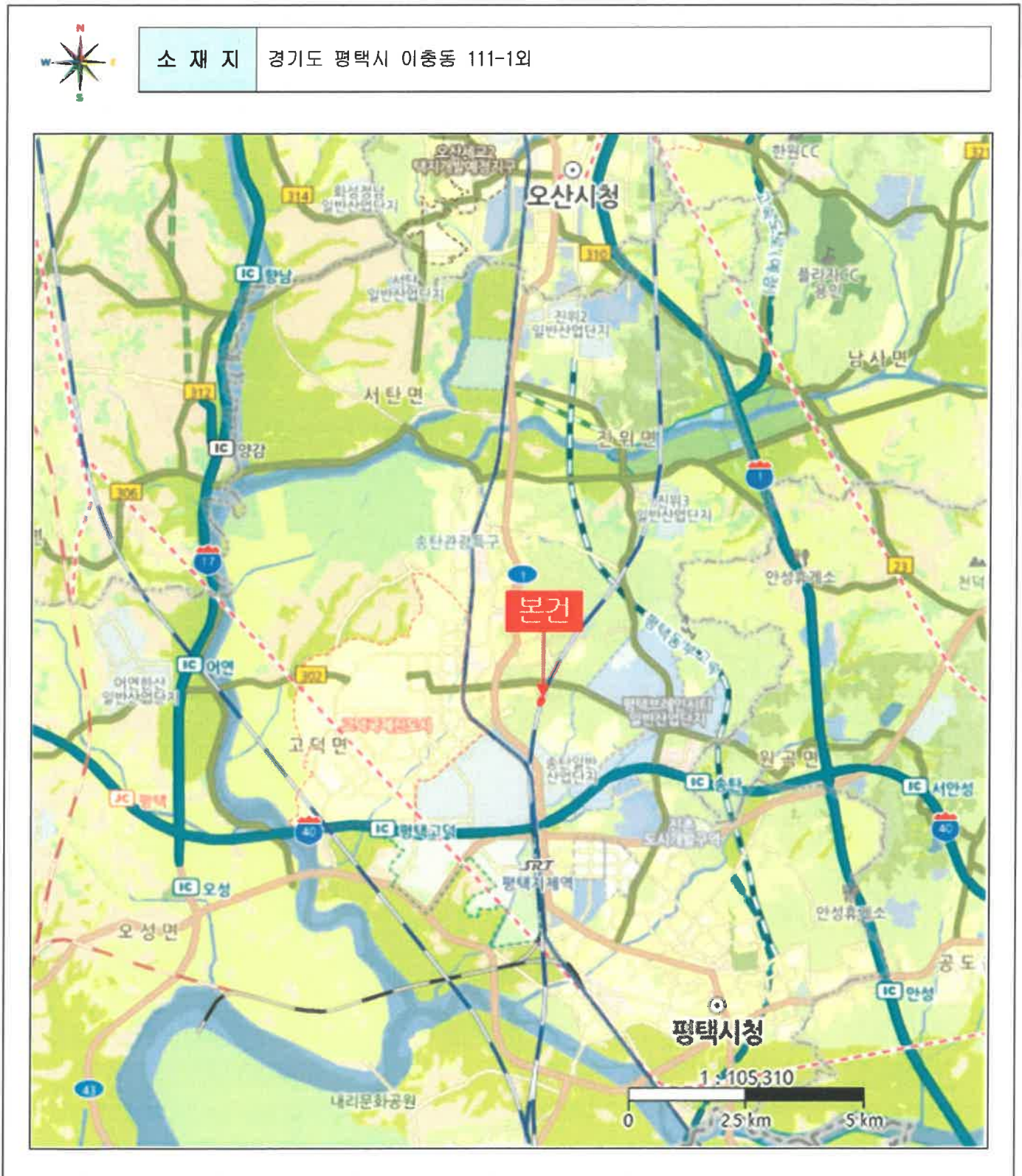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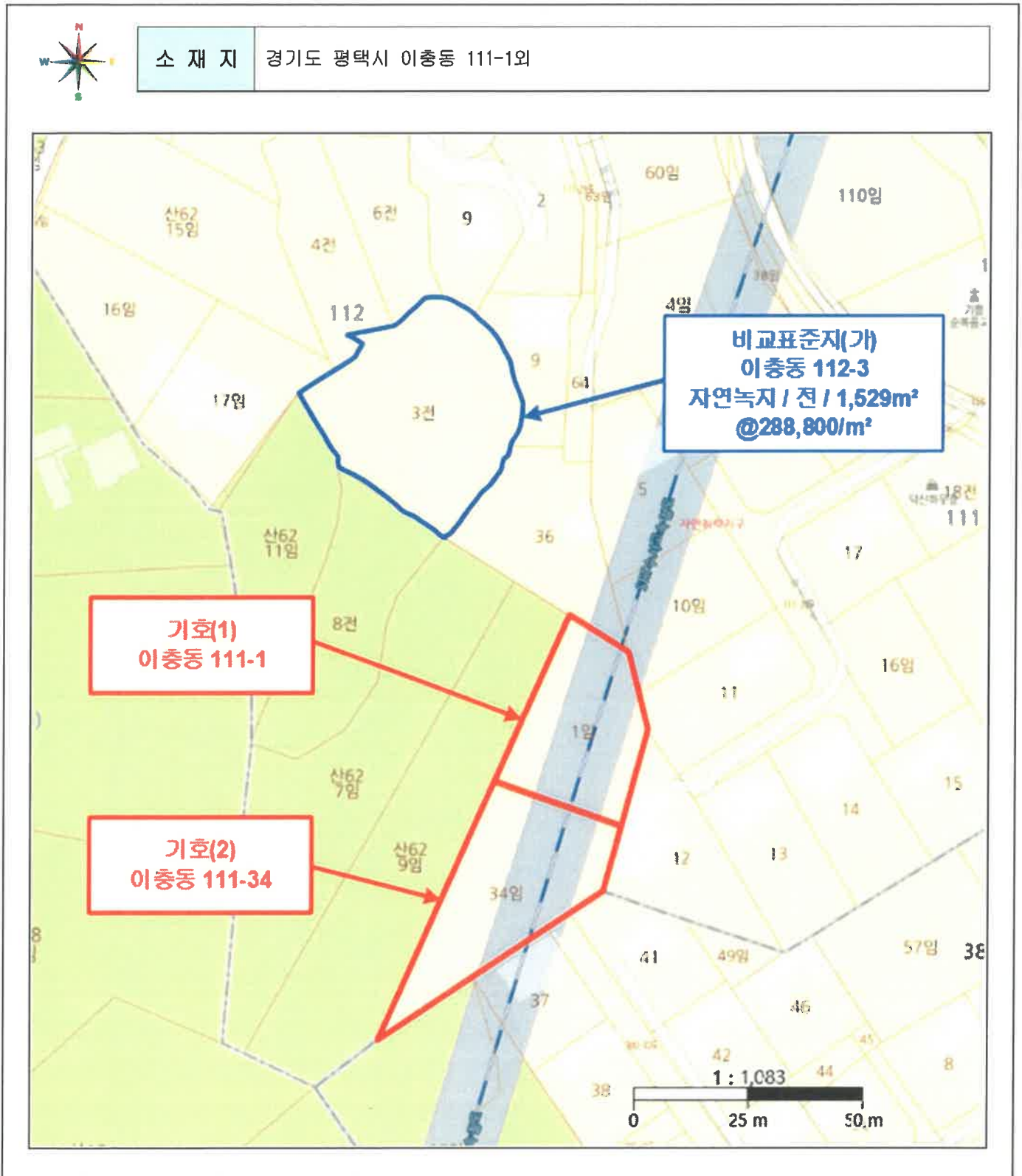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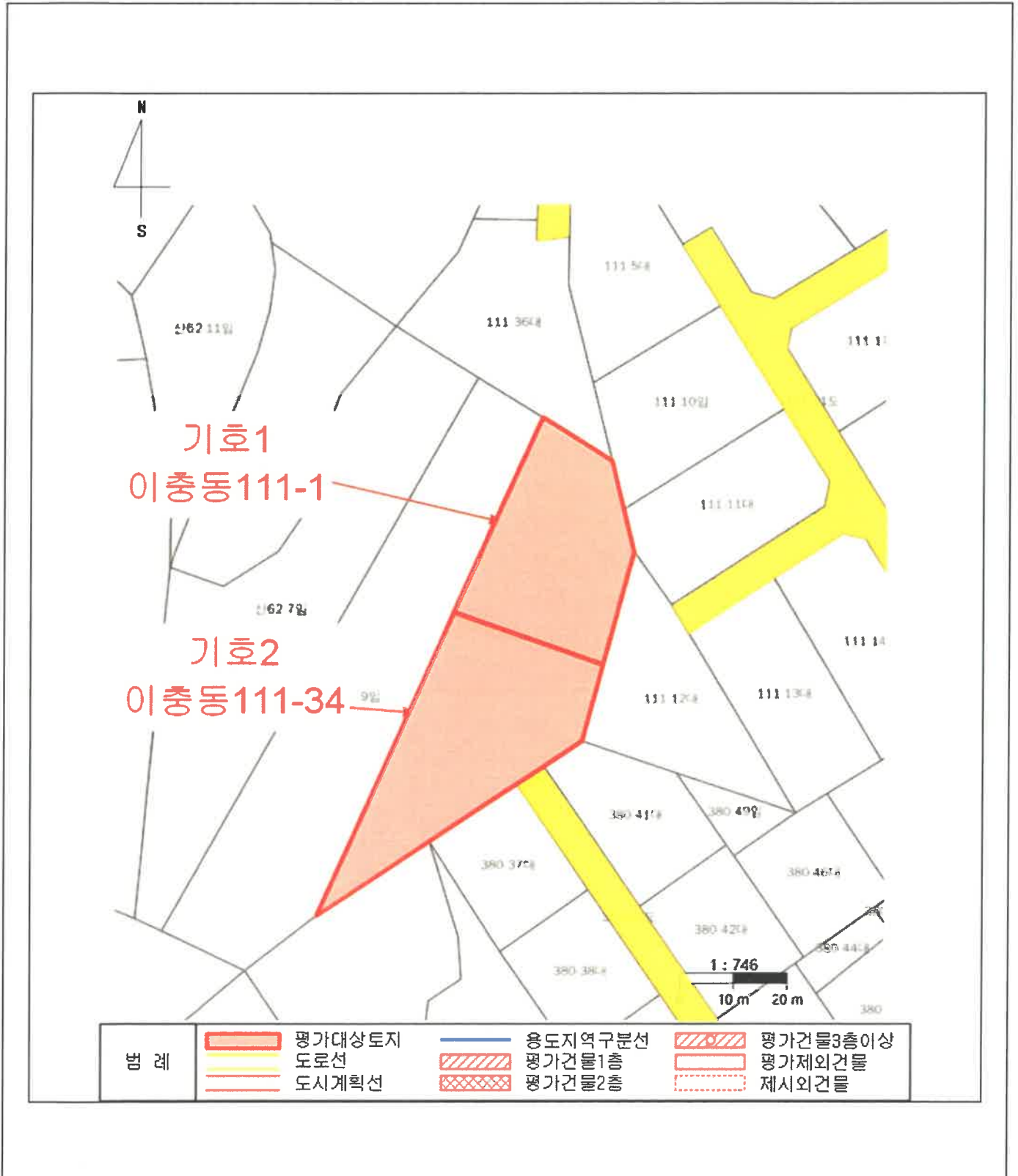
광역 위치도



상세 위치도



지 적 도



사 진 용 지



[기 호 (1) 전 경]



[기 호 (2) 전 경]

사 진 용 지



[본 건 축 대]



[본 건 입 구]

사 진 용 지



[주 위 환 경]



[주 위 환 경]